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함.
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제90조 및 제91조..... 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